

2026년도 『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』 시행 공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「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」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월 19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 경 훈
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 병 국

1 사업개요

□ 사업 목적

- 고난도 신기술 분야의 기술혁신이 시장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연구자-경영자 협력형 창업 촉진

□ 사업 추진근거

-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6조의3(연구개발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), 제16조의4(기술창업 활성화 등)
-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기술이전 · 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)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5조(정부의 책무)

□ 사업 내용

- 고난도 신기술분야의 과학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모험적·도전적 딥사이언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자(기술혁신)-경영자 (창업 · 사업화) 협력형 창업지원

<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 유형별 지원 내용 >



□ 중점 추진방향

- (딥사이언스 창업) 고난도의 과학·기술적 지식과 R&D를 기반으로 하는 신흥 기술분야*의 도전적 창업지원
 - * (예시) 양자·반도체, 핵융합, 합성생물학 등 고난도 기술분야
- (협력형 창업) 연구자와 경영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창업지원전문기관이 밀착 지원하는 협력형 창업지원
 - ※ (연구자 역할) 핵심기술의 검증·고도화, 지식재산권 창출·확보, 시제품 제작, 실증 등
 - (경영자 역할) 목표시장 분석, BM 개발, 창업팀 구축, 투자유치, 허가·인증 등
 - (창업지원전문기관 역할) 법인설립 시점까지 예비경영자 고용 및 시장탐색·BM개발, 시제품 제작 지원 등

□ 유형별 지원개요

① 유형1. 기획형 창업지원

- 연구자와 창업지원전문기관이 협업하여 최종 수요제품·서비스를 설정*, 경영자 발굴, 예비창업팀 구축, 목표시장 발굴·분석, 비즈니스모델·사업화 전략 수립, 연구자 기술사업화 교육 등 창업 준비 및 기획 지원

* (End-game 방식) 최종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가상의 제품·서비스를 결정한 후, 필요한 기술을 예측하여 기술발굴 및 R&D 수행하는 방식

※ 1단계(9개월, 창업준비·기획) + 2단계(3년, 기술고도화+창업) + 3단계(2년, 시장지향 R&D+초기성장) 지원하되, 단계평가를 통해 50% 내외의 과제를 차기 단계 계속 지원

※ (1단계 단계평가) 창업 기획의 충실성, 예비창업팀의 적절성,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, 시장 규모 및 사업화 가능성,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2단계 지원대상 선정

< (유형1) 기획형 창업지원 2~3단계 지원 개요 >

▶ (2단계 : 기술고도화 + 창업지원) 1단계(창업준비 · 기획) 지원과제 중 평가를 통해 1단계 과제의 50% 내외 지원

- 1단계를 통해 수립된 딥사이언스 창업 기획안(BM, 예비창업팀 등)에 따라 BM 고도화, 특히 포트폴리오 구축, 경영자 확정(예비창업자), 기술창업·사업화 교육, 시드투자 유치 및 창업 법인설립 추진

- 기술이전, 특히 포트폴리오 구축, 기술검증,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R&D 추진

※ (2단계 단계평가) 원천특허 확보, 창업 여부, 투자유치 실적, 제품·서비스 시장성·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

▶ (3단계 : 시장지향 R&D + 창업 초기성장) 2단계(기술고도화+창업) 지원과제 중 평가를 통해 2단계 과제의 50% 내외 지원

- 시장지향 후속 R&D, 제품·서비스 개발 및 실증, 인허가, 시장개발, 마케팅, 후속 투자 유치 등 추진

※ (최종평가) 투자유치 실적, 제품 · 서비스 시장성 및 사업성,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

② 유형2. 초기창업기업 지원

- 선행 R&D 수행을 통해 창업기획·사업화모델 등이 준비된 초기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시장혁신 R&D 지원
 - (기술고도화·창업) BM 고도화, 사업화 R&D를 통한 기술이전,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, 기술검증, 초기 투자 유치 등 추진
 - (시장지향 R&D) 시장지향 후속 R&D, 시제품·서비스 개발 및 실증, 제품·서비스 인허가, 시장개발 및 마케팅 추진, 후속 투자 유치 등 추진

③ 유형3. 창업인프라 구축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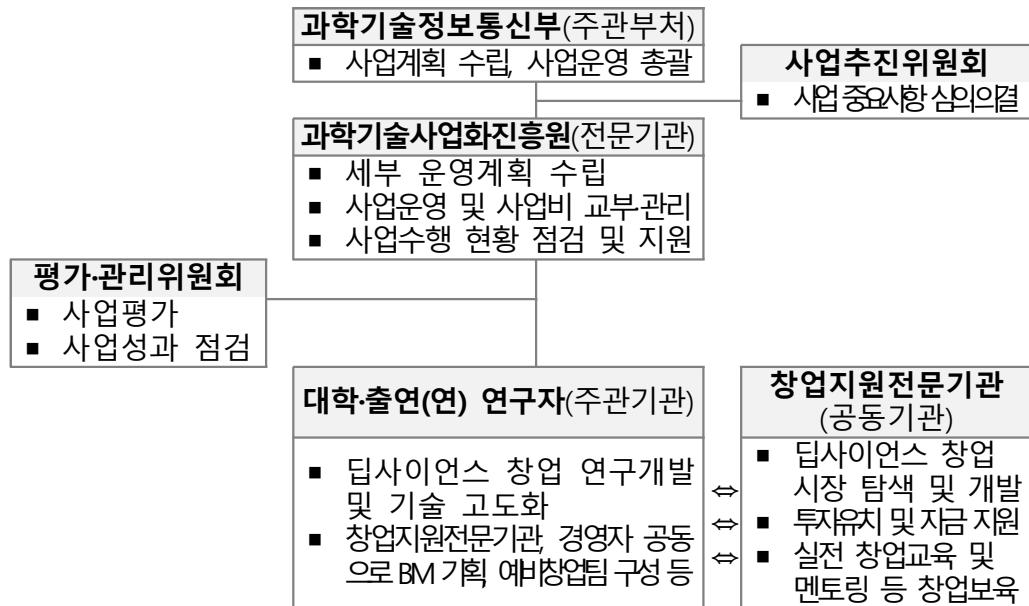
- 주관연구기관(정부출연연구원)이 딥사이언스 분야 기술을 보유한 연구자와 예비창업팀을 발굴·매칭하여 연구개발 및 창업·사업화 지원
 - (창업 인프라 제공) 창업을 수행할 경영자* 발굴·채용, 연구·창업 인프라 (공간, 시설·장비 등) 구축, 기관 인프라 활용 지원 등
 - * 민간 경영인, 기업 출신 경력의 전문가 등
 - (R&D 지원) 기관 내 딥사이언스 분야 기술·연구성과를 보유한 연구자(또는 예비창업팀과 공동) 연구 수행을 통해 창업기업 핵심기술 도출, 지식재산권 확보, 시제품 개발 등 지원
 - (창업·사업화 지원) 창업 준비·기획을 위한 제품·서비스 발굴, 비즈니스 모델·사업화 전략 수립, 시장분석 등을 지원하고, 창업기업 설립 후 인허가, 투자유치 등 전주기(제품·서비스발굴→창업→사업화) 창업 지원

□ 세부 지원내용

① 유형1. 기획형 창업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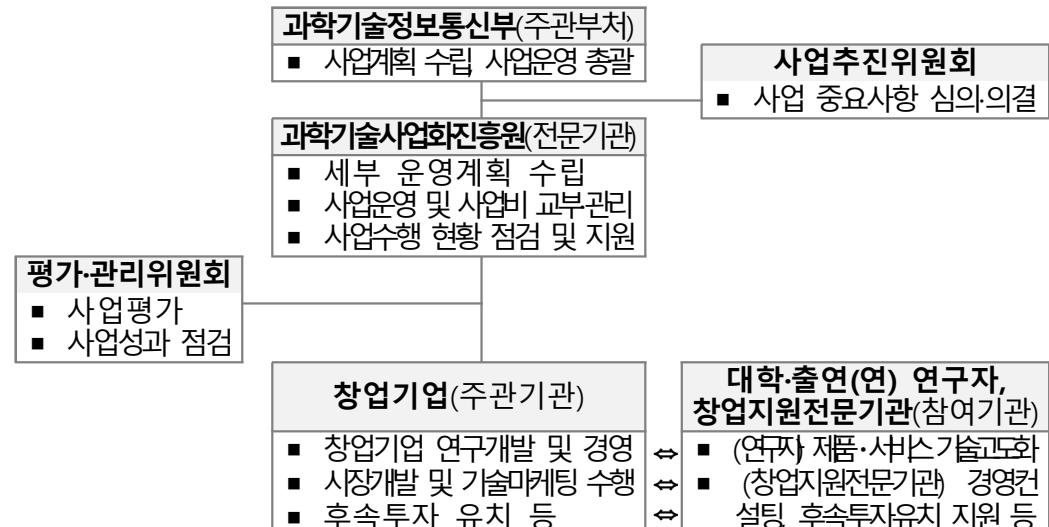
구 분	세부 내용									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딥사이언스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(창업前)원천기술 확보·예비창업팀 구축부터 (창업後)기술 고도화 및 시장지향 R&D까지 전주기 지원 ○ 고난도 新기술분야의 연구자(기술혁신)-경영자(창업·사업화) 협력형 창업을 준비하는 연구자(대학, 연구기관 등)-창업지원전문기관 컨소시엄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45 607 1377 735"> <tr> <th>구분</th><th>주관기관</th><th>공동기관</th></tr> <tr> <td>연구개발기관</td><td>▶ 대학·출연(연) 등 연구개발기관</td><td>▶ 필수창업지원전문기관</td></tr> <tr> <td>연구책임자</td><td>▶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자</td><td></td></tr> </table> 	구분	주관기관	공동기관	연구개발기관	▶ 대학·출연(연) 등 연구개발기관	▶ 필수창업지원전문기관	연구책임자	▶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자	
구분	주관기관	공동기관								
연구개발기관	▶ 대학·출연(연) 등 연구개발기관	▶ 필수창업지원전문기관								
연구책임자	▶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자									
지원대상	<p>※ 예비창업팀은 '경영자'를 1단계부터 2단계 1차년도 말까지 <u>발굴</u>하고, 경영자는 차년도부터 예비창업자(창업지원전문기관 소속) 또는 창업기업 대표(CEO)로서 사업에 참여</p> <p>[주관기관 참여자격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1단계 / 2단계) 대학 및 연구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 가, 나, 다, 라, 마, 바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②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 제2호의 비영리법인 ■ (창업이후, 2단계 / 3단계) 딥사이언스 창업 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 사호의 회사 또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또는 ②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2에 의한 벤처기업 <p>[창업지원전문기관 참여자격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② 「연구산업진흥법」 제6조에 의한 전문연구사업자(동법 시행령 별표1의 2. 연구관리산업 중 가. 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 관리업, 나. 연구개발 성과 관리 활용 지원업에 한함) ③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2에 의한 기술지주회사 ④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」 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⑤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」 12조의2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<p>※ ①~⑤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①항의 기관(창업기획자)과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함</p>									
지원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단계(창업준비·기획) 9개월 이내 <p>※ 1단계(9개월 창업준비·기획) + 2단계(3년, 기술고도화+창업) + 3단계(2년, 시장지향 R&D+초기성장) 지원하되, 단계평가를 통해 과제수의 50% 내외를 차기 단계 계속 지원</p> 									
지원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1단계) 과제별 100백만원/9개월 <p>※ (1단계) 1억원/9개월, (2~3단계) 5억원/년 내외</p> 									
지원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규기준 : '26년 4개* 과제 내외 <p>* 「2025년도 R&D 매치업(match-up) 챌린지」 세션1의 track 1에 선정된 연구자와 창업지원전문기관이 참여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개 이내 우선 지원</p> 									

○ (유형1) 1단계~2단계



사업추진체계

○ (유형1) 2단계~3단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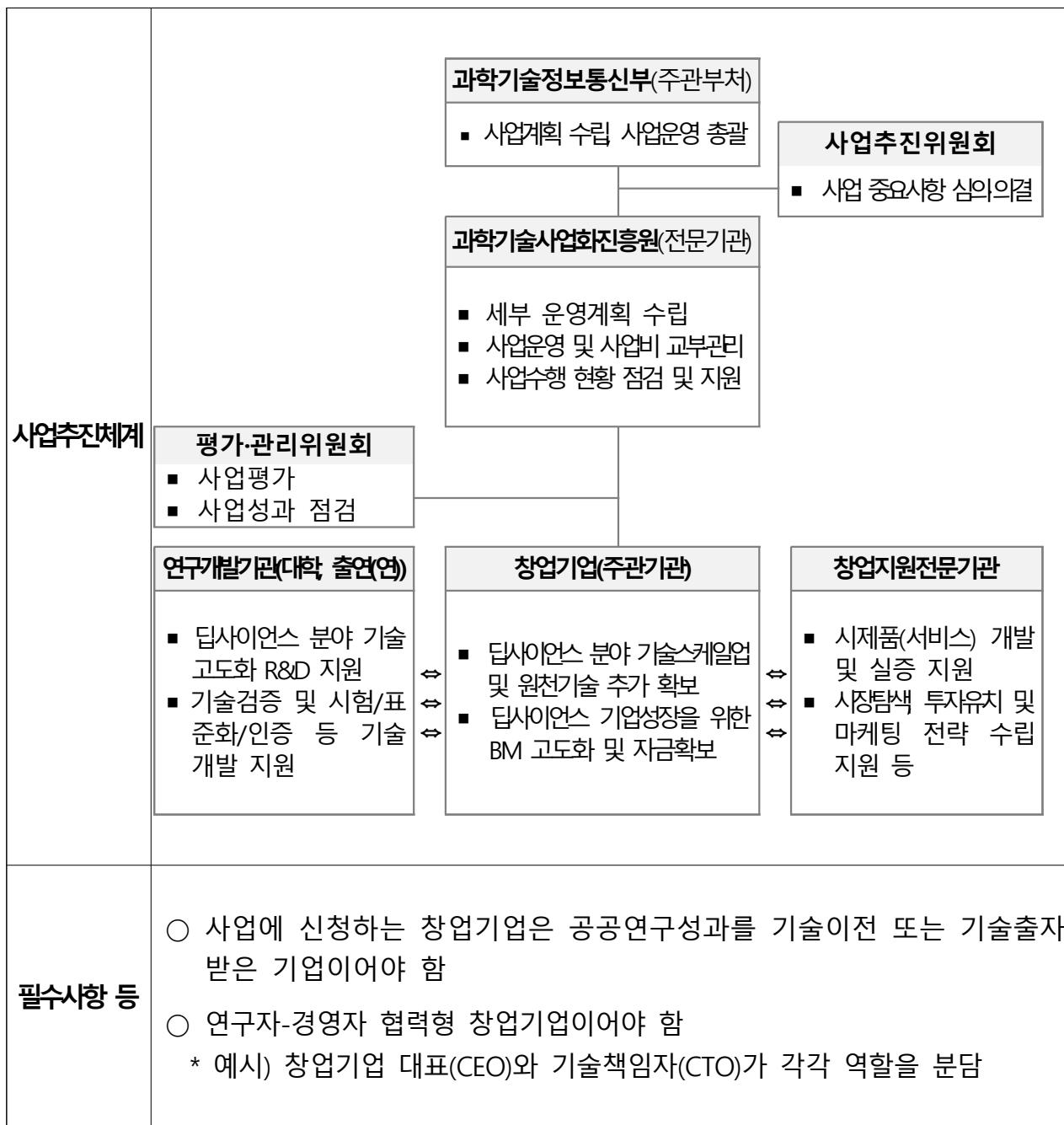
※ 2단계 중 창업 후 창업기업 및 대표(CEO)로 주관기관/연구책임자 변경

필수사항 등

- 창업지원전문기관은 디사이언스 창업기업 설립 시 시드(Seed) 투자 유치의 의무가 있으며, 투자 유치 계획 미이행이 확인(연차점검 등) 될 경우 주관기관은 창업지원전문기관 교체 가능
- 창업지원전문기관은 경영자 발굴 후 경영자가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창업기업 설립 전까지 예비창업자(경영자)를 채용하여 적정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함(해당시 2단계 인건비에 반영)
- 2단계 수행기간 내 창업 필수이며, 창업 시 전문기관 심의를 통해 창업기업 대표(경영자, CEO)를 연구책임자로 변경

② 유형2. 초기창업기업 지원

구 분	세부 내용									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행 R&D 수행을 통해 창업기획, 사업화모델이 준비된 초기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시장혁신 R&D 지원 ○ 대학·출연(연) 등 공공연구성과 기술이전(기술출자) 받은 딥사이언스 초기 창업기업이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기관 혹은 창업지원전문기관과 컨소시엄 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주관기관</th> <th>공동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연구개발기관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딥사이언스 창업기업* 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필수연구개발기관(대학, 출연(연) 등) ▶ 창업지원전문기관 </td> </tr> <tr> <td>연구책임자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창업기업 대표 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주관기관	공동기관	연구개발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딥사이언스 창업기업*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필수연구개발기관(대학, 출연(연) 등) ▶ 창업지원전문기관 	연구책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창업기업 대표 	
구분	주관기관	공동기관								
연구개발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딥사이언스 창업기업*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필수연구개발기관(대학, 출연(연) 등) ▶ 창업지원전문기관 								
연구책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창업기업 대표 									
	<p>*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, <u>기업 설립일이 3년 이내인 창업기업</u></p> <p>※ 컨소시엄 구성 시 연구개발기관은 필수, 창업지원전문기관은 선택</p>									
지원대상	<p>[주관기관 참여자격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 사호의 회사 또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또는 ②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2에 의한 벤처기업 <p>[공동기관 참여자격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연구개발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 가, 나, 다, 라, 마, 바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②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 제2호의 비영리법인 ■ 창업지원전문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② 「연구산업진흥법」 제6조에 의한 전문연구사업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법 시행령 별표1의 '1. 주문연구산업, 2. 연구관리산업 3. 연구장비산업, 4. 연구재료산업' ③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2에 의한 기술지주회사 ④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」 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⑤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」 12조의2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									
지원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제별 최대 33개월 									
지원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제별 5억원/년 × 3년 (1차년도는 3.75억원/9개월, 최대 13.75억원) 									
지원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규기준 : '26년 4개* 과제 내외 <p>* 「2026 AI Co-Scientist Challenge Korea」 '과학기술 AI Agent 개발' 부문 대상 수상자 중, 참여자격을 충족한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1개 과제 이내 우선 지원</p>									



③ 유형3. 창업인프라 구축 지원

구 분	세부 내용						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창업지원 기반 강화를 위해 정부출연연구원이 창업지원 인프라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, 유망 예비창업자 발굴 및 내부 연구자와 매칭하여 협력형 창업성과 제고 						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창업 지원 인프라 및 역량*을 보유한 정부출연연구원 * 창업 인프라(시설·장비, 공간) 제공, 공동연구수행, 사업화 지원 활동 등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45 585 1393 713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주관기관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연구개발기관</td><td>▶ 정부출연연구원 (창업 지원 인프라 보유 연구원)</td></tr> <tr> <td>연구책임자</td><td>▶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자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[주관기관 참여자격] <p>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 다*목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*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</p> </div> 	구분	주관기관	연구개발기관	▶ 정부출연연구원 (창업 지원 인프라 보유 연구원)	연구책임자	▶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자
구분	주관기관						
연구개발기관	▶ 정부출연연구원 (창업 지원 인프라 보유 연구원)						
연구책임자	▶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자						
지원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제별 최대 33개월 						
지원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제별 13억원/년 × 3년 (1차년도는 9.75억원/9개월, 최대 35.75억원) 						
지원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규기준 : '26년 2개 과제 내외 						
사업추진체계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align-items: flex-start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주관부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계획 수립, 사업운영 총괄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사업추진위원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 중요사항 심의의결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(전문기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세부 운영계획 수립 ■ 사업운영 및 사업비 교부·관리 ■ 사업수행 현황 점검 및 지원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평가·관리위원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평가 ■ 사업성과 점검 </div>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정부출연연구원(주관기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■ 딥사이언스 분야 예비창업자/ 경영자 발굴, 창업준비·기획, 기술고도화(R&D) 및 창업 지원 ■ 딥사이언스 기업성장을 위한 BM 고도화 및 투자유치 등 지원 </div>						
필수사항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구개발계획서 내 창업인프라 보유현황 및 인프라 고도화 계획 제시 과제 수행기관(정부출연연구원)은 딥사이언스 창업을 위한 사업화 R&D를 과제수행 기간(3년) 내 3개 이상 지원해야 함 ※ 사업화 R&D 지원 대상별 지원 기간/규모는 과제 수행기관이 제시 						

3 선정평가

□ 평가절차

-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해 사전검토,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과제를 확정하고,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

< 선정평가 절차 >

신청 접수	선정평가		최종선정	결과보고
신청서 제출 및 ①사전검토 주관기관→ 전문기관	기본역량 ②서면평가 *딥사이언스 분야 적정성 검토	과제수행역량 계획 ③대면평가	선정결과 ④최종심의	결과 보고
	선정평가 위원회		사업추진 위원회	전문기관→ 주관부처

- ① (사전검토) 지원신청 과제별 참여기관 신청자격 충족 여부,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평가대상 지원신청 과제 확정(전문기관)
※ 지원신청 과제의 딥사이언스 분야 적합성에 대해 검토
※ 경쟁률이 2:1 미만인 경우 등 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서면평가 미실시 가능
- ② (서면평가) 과제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연구책임자·신청기관의 사업 수행 계획·역량에 대해 서면평가(선정평가위원회)
※ 지원신청 과제의 딥사이언스 분야 적합성에 대해 검토
※ 경쟁률이 2:1 미만인 경우 등 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서면평가 미실시 가능
- ③ (발표평가) 지원신청 과제별 수행계획·목표의 적정성 및 수행 역량에 대한 연구책임자 발표·질의응답(선정평가위원회)
- ④ (최종선정)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주관기관 선정 및 지원 예산 등을 최종 확정(사업추진위원회)

□ 평가지표

○ 선정평가 배점기준

< 유형1. 선정평가 지표(안) >

평가항목 (배점)	주요 평가내용
기술분야 적합성 및 기술의 우수성 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핵심 보유기술의 딥사이언스 분야 부합성딥사이언스 분야 연구팀 보유 기술의 우수성(논문, 특허 등)핵심 보유기술의 기술수준 및 완성도
창업·사업화 가능성 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창업 예정 제품·서비스의 시장성 및 사업성보유기술 기반 창업 성공 가능성사업 기간 내 창업 가능성,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, 창업 예정 기업의 성장 가능성
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수행기관 역량 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창업 기획 추진 계획(연구계획)의 우수성창업 기획 추진 방법/전략, 기술·시장·IP 분석, BM수립, 예비창업팀 구성, 기업성장 전략 등연구팀(대학 또는 출연(연)) 구성의 적절성 및 수행 역량 우수성창업지원팀(창업지원전문기관 및 참여기관) 구성의 적절성 및 우수성
파급효과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창업·사업화 시 파급효과의 우수성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기대 효과

< 유형2. 선정평가 지표(안) >

평가항목(배점)	주요 평가내용
기술분야 적합성 및 기술의 우수성 (2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창업기업 핵심 보유기술의 딥사이언스 분야 부합성딥사이언스 분야 경쟁 기업 대비 보유 기술의 우수성(논문, 특허 등)핵심 보유기술의 기술수준 및 완성도
사업화 가능성 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창업기업 제품·서비스의 시장성 및 사업성제품·서비스 수요, 시장 창출 가능성, 시장환경, 시장규모 등창업 기업의 성장 가능성제품·서비스의 경제적 성과 달성 가능성, 시장 경쟁력 등
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및 수행기관 역량 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연구개발 목표의 적절성연구개발 수행계획 및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제품화 R&D, IP확보, 제품·서비스 개발 및 실증 등BM 고도화, 기업성장전략,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계획 등연구개발 추진체계(수행기관 역할 분담) 및 자원투입 계획의 적절성연구책임자 역량 및 창업기업 연구팀 구성의 우수성(CEO, CTO, CFO 등)수행기관(창업기업, 연구개발기관, 창업지원전문기관 등) 역량의 우수성
파급효과 (1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파급효과의 우수성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기대 효과

< 유형3. 선정평가 지표(안) >

평가항목(배점)	주요 평가내용
수행역량 (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관기관의 공공기술사업화 역량의 우수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(3년간) 수요자발굴/투자/성장지원·성과 등 기술사업화 지원 실적 - 시장조사, 선행특허 조사, 기술평가 DB 등 관련 자원 확보 수준 - 기관이 보유한 딥사이언스 분야 창업후보 기술의 우수성 ■ 공공기술사업화 관리체계의 우수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창업·기술사업화 프로세스의 우수성 - 업무표준화 및 관련 규정, 매뉴얼 제정 및 준수 여부 ■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사업 수행 역량의 우수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- 참여인력 투입규모의 적절성
사업 추진계획 (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 수행목표의 적절성 ■ 사업 수행계획 및 창업지원 전략의 우수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딥사이어스 기반 창업팀 및 초기기업 발굴 계획의 적절성 - 사업계획 고도화 및 투자유치 계획 등 지원 전략의 적절성 - 창업 기업에 대한 후속지원 계획의 적절성
기대효과 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수행 기대효과의 우수성

※ 평가지표는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

4

신청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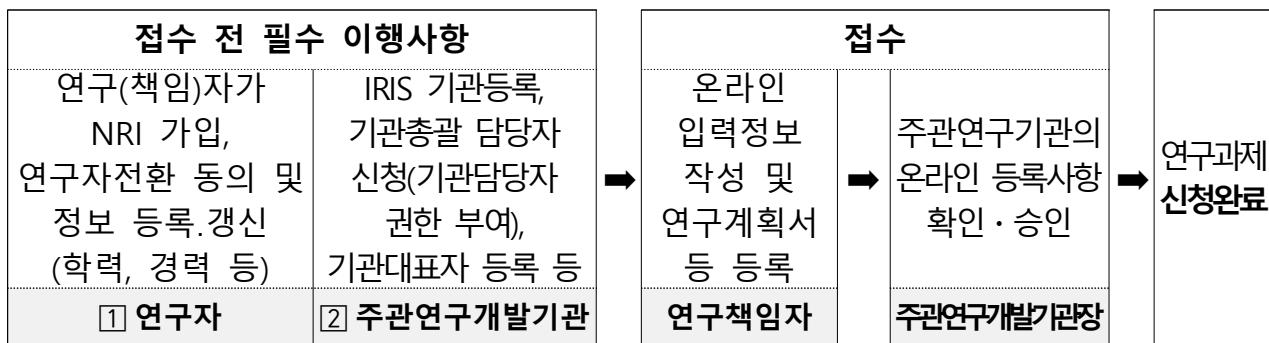
공고 및 신청 기간

구분	내용
사업 공고 기간	2026.1.19.(월) ~ 2026.2.24.(화) 16:00 (37일)
연구책임자 신청 기간	2026.2.4.(수) ~ 2026.2.24.(화) 16:00 (21일)
주관연구기관 검토·승인 기간	2026.2.4.(수) ~ 2026.2.24.(화) 16:00 (21일)
신청 절차	주관연구책임자 접수 ▷ 주관연구기관 승인 ▷ 신청 완료

※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 완료.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 최종 완료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동 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이 운영하는 IRIS(<https://www.iris.go.kr>)를 통해 과제 신청, 평가 및 관리함
 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



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

- ▶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, 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
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
동이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 ③ NRI 내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정보 등록 필수

* 경력정보에서 구무(소속)부서 등을 필수

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
※ ① 및 ② 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. ③ : 연구책임자 필수

② (주관연구개발기관)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·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·승인을 완료하여야 함
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 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
□ 신청 관련 주의사항

- (연구책임자) 연구책임자는 접수 마감일까지 온라인 입력사항 및 파일 업로드 후 제출 완료
 - ※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(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완료 여부 확인 필수)
 - ※ 마감시간의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에 신청 절차 완료 필수
- (주관연구개발기관)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,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

□ IRIS 온라인 입력 및 첨부 자료

- (온라인 입력) 기본정보, 과제요약정보,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(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), 연구비 내역, 주요 연구수행실적(수행완료 과제, 수행(신청) 중 과제) 등 정보 입력
- (제출서류) 유형별 제출자료(연구계획서 및 증빙자료, 동의서 등) 업로드
 - ※ 해당 별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일괄 업로드

구분	대상	목록	비고
별첨 1	공통	[필수] 연구개발계획서	별첨 양식
별첨 2	공통	[필수] 개인정보·과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, 제3자 제공 동의서	
별첨 3	공통	[필수] 기관참여 확약서	
별첨 4	공통	[필수]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
별첨 5	[유형2]	[해당시]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	
별첨 6	[유형2]	[해당시]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·관리계획	
별첨 7	[유형2]	[필수] 기술이전(출자) 증빙 서류 (기술이전계약서 등)	
별첨 8	[유형2]	[해당시] 선행R&D 관련 우수성 증빙 자료 (수상, 보도자료 등 3p 이내)	
별첨 9	[유형3]	[필수] 기관의 창업지원인프라 보유현황 및 창업 지원사례(3p 이내)	

□ 문의처

담당부서	구분	전화번호	이메일
창업탐색선도센터	사업 문의	02-736-9823	matrix@compa.re.kr
	신청 문의	02-736-9021	grace@compa.re.kr

5 사업신청 유의사항

□ 연구개발 과제수 제한

- 동 사업은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지원과제로, 3책 5공 예외^{*}에 해당
* '26년 신규과제부터 예외 적용

□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

-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에 따라 산정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[별표2]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참고하여 적정 연구비를 산정해야하며,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별로 계상하여 관리해야 함
※ 연구개발비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 특성 및 관련 규정 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
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
- 연구장비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,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는
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승인여부 심의함
※ 연구장비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'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' 작성 제출

□ 기관부담연구개발비(기업 주관/공동 과제)

- 중소·중견기업은 아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적용

<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>

구분	정부지원연구개발비	기관부담연구개발비	(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)
중소 기업	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75% 이하	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25% 이상	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10% 이상
중견 기업	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70% 이하	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30% 이상	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13% 이상

※ 총연구개발비 = 정부출연금 +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물+현금)

※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'전문연구사업자' 신고기업인 참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면제 가능(주관기관은 제외)

□ 정부납부기술료

- 기술료 납부 의무기관은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, 제39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※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※ 관련근거: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(기술료 징수 및 사용),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38조(기술료의 납부), 제39조(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)

< 정부납부기술료 기준 >

기술료 납부의무기관	제3자 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	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	납부 상한
중소기업	기술료 징수액의 2.5%	R&D성과매출액×기술기여도*×2.5%	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%
중견기업	기술료 징수액의 5%	R&D성과매출액×기술기여도*×5%	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%

* (기술기여도) 기업이 사용한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 (기술기여도 = 정부지원연구개발비 / 총연구개발비)

□ 지원제외 대상

-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, 참여기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수행하는 기관 중 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

□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

- 연차 · (유형¹)단계 · 최종보고서 제출의무 준수※ 관련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
- 평가위원회·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조정, 과제 구성 조정, 연구비 증감, 연구기간 조정, 지원중단, 조기종료 등 가능
-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※ 관련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

□ 기타 사항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동 법 시행령·시행규칙,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에 따라 적용
※ 협약, 과제 및 성과 관리, 연구비 집행·정산 등 적용
- 각 단계별 주관기관 연구책임자에게 단계별 주관, 공동, 위탁 기관의 예산 배분의 자율성을 보장
※ 단,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사업추진위원회 검토결과에 따라 예산 배분이 조정될 수 있음
- 본 사업 유형1의 1단계는 창업준비·기획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「외부전문기술활용비」 40% 초과 사용을 인정

<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>

제25조(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)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- 응모자가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인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, 사업공고를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선정평가 결과,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 제외되거나 협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과제를 선정할 수 있음
- 선정평가 시 동점과제의 경우, 다음의 평가항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
 - ※ (유형1,2)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및 수행기관 역량 → 사업화(창업) 가능성 → 기술분야 적합성 및 기술의 우수성 → 파급효과
 - ※ (유형3) 추진계획 → 수행역량 → 기대효과
-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「과학기술기본법」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」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, 행정규칙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을 적용

6

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(안)

절차	내용	일시	주체
사업 시행계획	'26년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확정	'25.12월	주관부처 (과기정통부)
▼			
사업공고	'26년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	'26.1월	주관부처 (과기정통부)
▼			
신청서 접수	사업신청서 접수 (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)	'26.2월	전문기관 (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)
▼			
지원대상 선정평가	사업신청서 서면심사 및 발표평가	'26.3월	전문기관 (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)
▼			
협약체결/사업비 지급	선정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	'26.4월	전문기관 (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)
▼			
과제수행	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	'26.4~12월	주관기관
▼			
중간점검	사업수행 진행상황 점검	'26.8~9월	전문기관 (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)
▼			
단계평가/ 연차점검	(유형1 신규과제) 1단계 평가결과로 2단계 지원 대상과제 선정 (유형2,3) 수행과제 연차점검	'26.12월	전문기관 (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)

※ 상기 일정은 '26년 신규과제 기준이며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